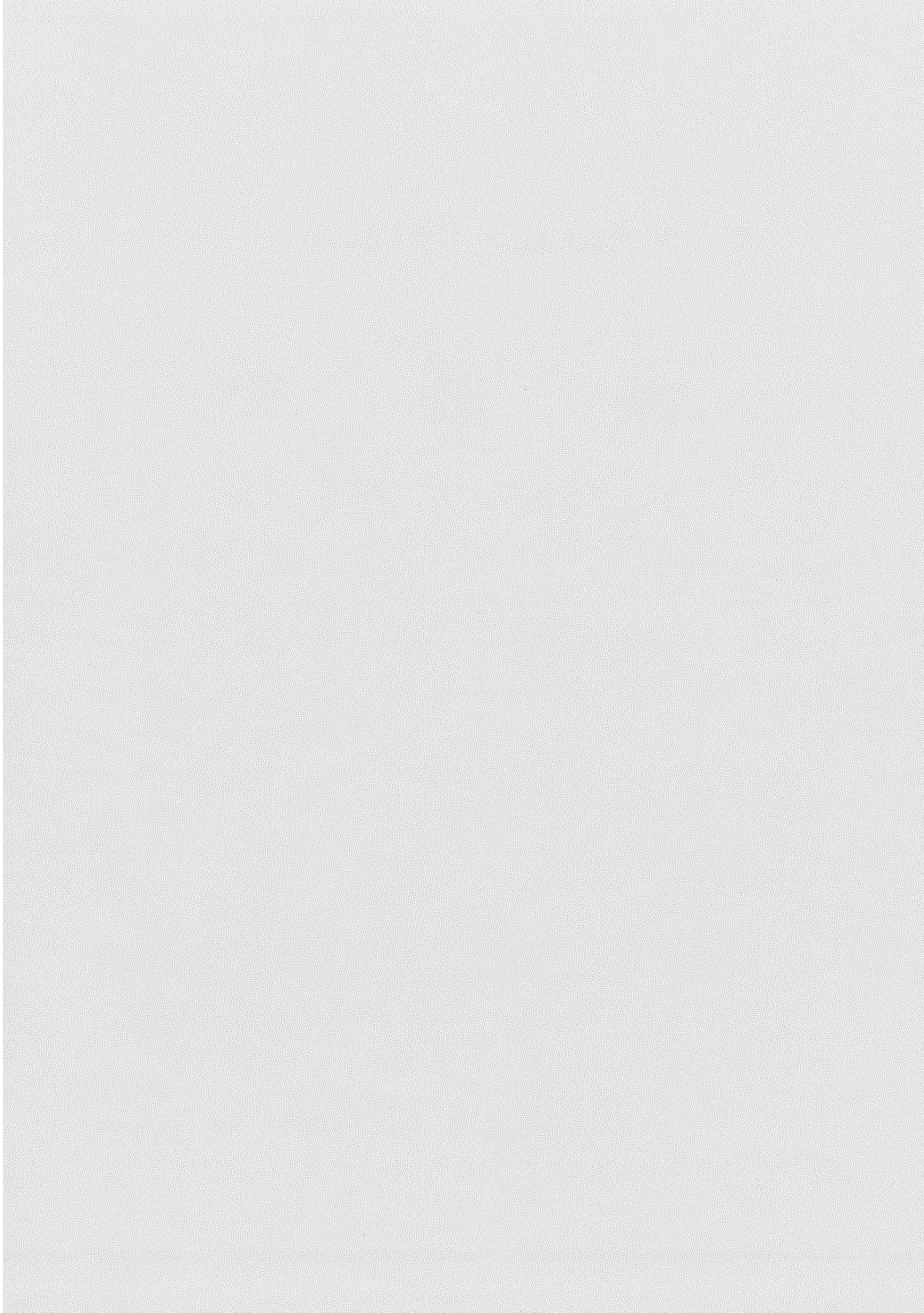


第139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2. 4.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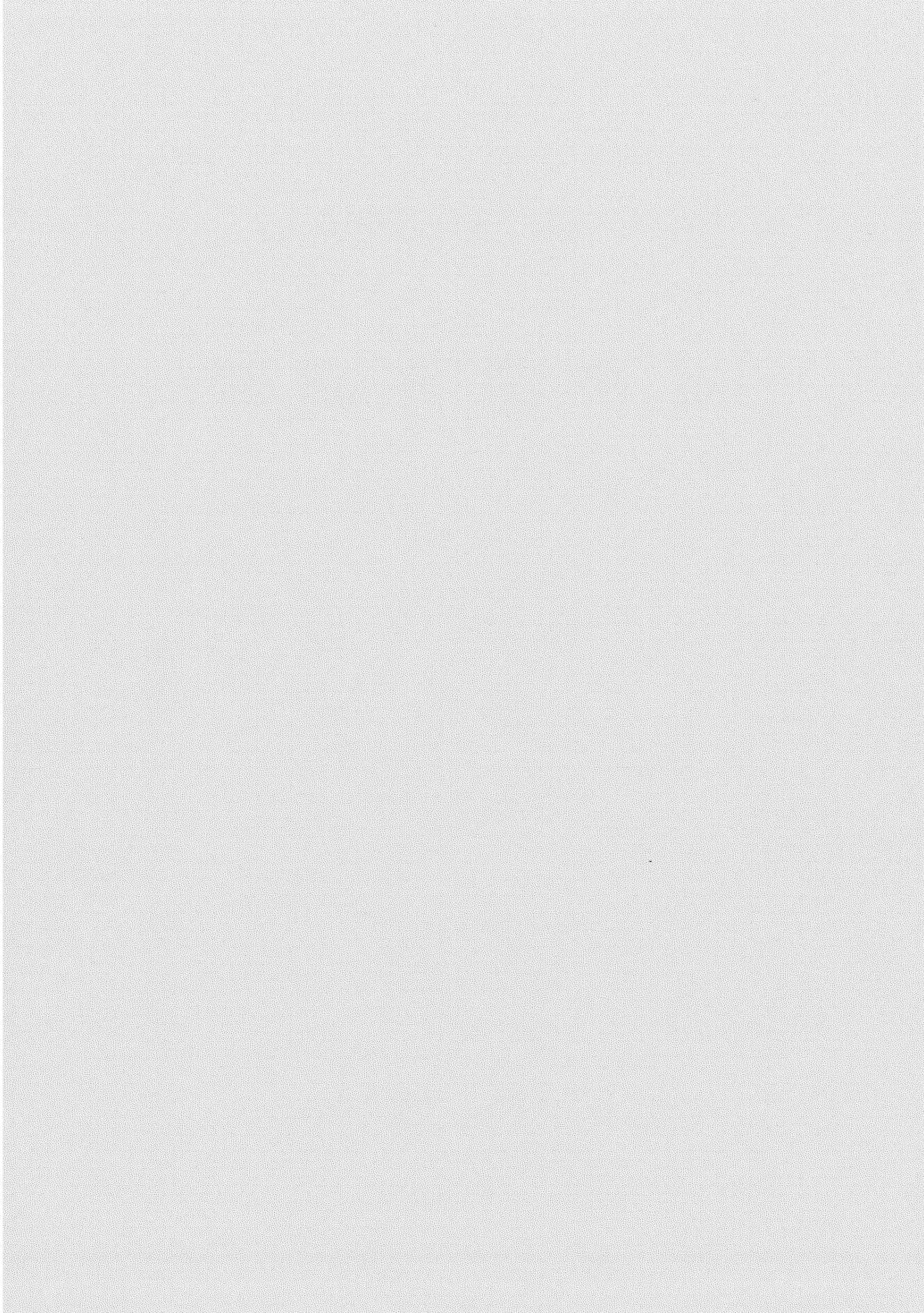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39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개회식197

II. 제13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199

III. 부 록

1. 의사일정안209

2. 김영학진천교육장직위해제촉구결의안211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2년 4월 10일 (수요일) 11시 06분

開會式順(第139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왕년)

(11시 06분 개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왕년

지금 13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11시 08분 폐식)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2년 4월 10일 (수요일) 11시 08분

議事日程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39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김영학진천교육장직위해제촉구결의안채택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39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김영학진천교육장직위해제촉구결의안채택의건(조일환 위원외 6인 발의)

(11시 08분 개의)

1. 경과보고

● 의장 손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청으로부터 교육정보화과장님은 행정정보화 연수 참석 관계로 이번 회기에 참석 못한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 의장 손만재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눔)

● 의사과장 조계환

의사과장 조계환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의안 발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 4월 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

[제139회-제1차 본회의]

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일환 교육위원 외 6인의 위원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 제 2002-3호로 제13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으며, 2002년 4월 2일 조일환 교육위원 외 6인의 위원으로부터 김영학 진천교육장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전 회기 의결안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22일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신 교육기관 방문결과 보고서는 3월 23일 집행청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김영학 진천교육장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39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0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139회 충청

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0일 1일간으로 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하여 위원발의된 김영학진천교육장직위해제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3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0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김영학진천교육장직위해제촉구결의안 채택의건

(11시 12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김영학진천교육장직위해제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조일환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환 위원 발언대로 나눔)

● 조일환 위원

먼저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부득이 이 자리에서 차후에 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해

서 의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의안에 대해서 위원 간담회에 서 제가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고, 또 위원님들께서 모두 회의 소집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 대단히 감사하고 눈물이 나도록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제안설명의, 소위 시나리오 안이 팩스로 보내 왔을 때, 본 위원의 생각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유선상으로 제가 사무국에 통지해서 이와 같은 이 제안설명서가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도 제 내심은 좀 내 본래의 생각이 미흡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제안설명의 시나리오가 준비됐느냐?” “됐다.” 그것을 보여 달라고 했더니, 이거와 전혀 다른 시나리오 안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어떤 연유에서 이러한 시나리오가 변조가 되어서 본 위원에게 전달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수정할 것을 저는 권유받았습니다.

통탄스럽고 이 위원회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 존재해서, 충북교육의 흐트러진 교육현장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 분발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저는 더욱이 분개하는 것입니다.

의장님께서서는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위원활동이 제약을 받고, 본 위원의 제안의 뜻과 전혀 다른 이러한 제안설명서가 저에

게 주어지는 사유를 밝혀서서 거기에 응분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제 신변에 관한 사항을 잠시 말씀 올리면, 저도 부득이 오늘 시나리오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충북교육이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교육감이 사퇴를 했습니다.

재판을 받아서 재판을 진행하고 그것으로 임무를 다하는 재판관이 판결의 결과에 구애됨 없이 “충북교육의 재건을 위해서 사퇴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러한 취지의 권유라는 것은 저는 충북교육의 일단을 책임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충북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소위 “이러한 교육사태를 수습하고 개선하고 촉구해야 될 충북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저는 질타로 저는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양반의 고장이다, 청풍명월이다, 저는 이런 얘기를 우리 충북사람들 잘 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청심, 마음을 맑게 하고, 명월이 아니라 명덕, 덕을 더욱 밝게 해서, 우리 양심껏 우리 교육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분발해야 되지 않을 때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으로 오늘 이

[제139회-제1차 본회의]

차리에 섰습니다.

부득이 이 안을 낸 것은 여기 제안설명에 차후에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3월 20일에도 위원님들께서 7인이 모두 서명을 했습니다.

위원이 서명을 해서 공문으로 집행청에 발송되었다는 것은 이미 의결의 효과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언의 회신없이 교육위원회의 이러한 요구사항을 묵살하려는 것은 저 개인의, 우리 교육위원이 아니라 교육자치를 말살시키고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적인, 저는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째서 개인도 아니고 교육위원회 의장의 직인이, 7인이 서명을 해서 요구한 것이 어떠한 사유가 없습니다.

하물며 제가 서면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회신을 보면 가관입니다.

“진천교육장을 해임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임명권자의 고유권한이다.” 그렇다면 예산편성권을 가진 교육감이 굳이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상정하는 이유는 뭐니까?

우리 교육위원회가 인사권을 남용하고 횡포를 해도 잔소리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부득이 이러한, 또 마지막에 이러한 결의안을 채택을 하고 이렇게 소모적인 이러한 의회를 운영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도 늘 어느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오늘날 충북교육이 이 모양이 된 것은 저

나 여러분들이나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도의적임을 떠나서 우리는 임무상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늘 해 왔습니다.

제가 신상발언 겸 부득이 오늘 이러한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일환 교육위원입니다.

김영학 진천교육장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1일 간담회에서 협의회를 거쳐서 본 위원을 포함한 전체 교육위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먼저 결의문 내용을 간략히 말씀 올리면, 2002년 3월 20일 김영학 진천교육장의 직위해제를 권고하였는 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으므로 직위해제의 촉구를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20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김영학 진천교육장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 직위해제 할 것을 권고하는 문서를 전체 교육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집행청에 송부하였으나, 집행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아무런 결과도 통보 받지 못하였으므로 동 결의안을 채택하여 김영학 교육장의 직위해제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위해제 촉구 사유를 말씀 올리면은, 첫

째,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고, 둘째로 특별한 사유없이 동법 제2항을 적용하여 면죄부의 특혜를 부여함은 재판 진행상의 연관된 피고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부당한 판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재판을 해야 한다는 동법의 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동법의 직위해제 조항은 반드시 시행해야 하나, 부득이 객관적 합당한 예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법의 정신이나 지난 관행으로 비추어서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고, 네 번째, 본 위원이 2월 22일 서면질문으로 직위해제 불이행사유를 확인한 바, 발령권자의 고유권한이라는 답변서는 직권남용의 여지가 농후하고, 부당한 공무원인사 관행에 불명예스러운 관례를 남길 우려가 예상되어 결자해지, 사회적, 도덕적 선상에서 사퇴한 김영세 교육감이 사퇴 이전에 직위해제 시행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제가 첨부해서 말씀 올리면은, 제가 지난 2월에 현 교육청을, 당 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공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사적인 점을 이해해 달라는 양해를 구하고 김 교육감에게 “어째서 직위해제를 안하고 있는가?” “일선 교육장의 임무가 무엇인가?” “교육현장을 관장하고 또 교사의 교육 충실을 위해서 지도 감독해야 될 교육장이 재판상에서 ‘나는 이명이고, 고혈압이고, 당뇨고, 소화기질환이 있

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바 수사관이 시키는 대로 나는 맹목적으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 사실과는 다르다’ 하고 당신이 진술했지 않느냐, 그러면 당신이 지금 교육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당신의 건강상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을 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진천교육 뿐 아니라 교육자의 양심에 따라서 사퇴나 직위해제를 요청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 교육장 답변은 “교육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를 한 바 있고, 또 내가 지금 사퇴를 하거나 하려면 연금을 나는 못 받는 불이익을 받는다. 난 지금이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처지만 된다면 사퇴를 해 달래라.”

여기 계신 집행청 관계관, 그리고 교육위원 여러분, 교육장이 연금 때문에 근무하고 돈 때문에 근무한다는 그 말과 뭐가 다릅니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연금 때문에 내가 못 내고 있고 사퇴를 못하고 있다, 충북교육이야 죽든 살든. 또 가상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당뇨병은 불치의 병이고 또 고혈압은 난치의 병입니다.

제가 서면질문으로 요청을 했는데 공모 당시의 진단서만 제출했습니다.

다시 구두로 촉구해서 다시 받은 진단서입니다.

이 진단서에 의하면은 소화기질환 정상, 간염검사 정상, 항원 음성, 호흡기질환 정상,

신경, 정신, 이비인후 질환 모두가 정상입니다.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나쁘고, 이제 당신 건강이 문제돼서 할 때는 이러한 진단서가 제출됩니다.

우리 다 떠나서 양심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양심적으로.

교육장의 교육적 기능과 역할은 일선 교육현장을 지휘 감독해야 할 중요한 직위임에도 본 교육장은 재판과정에서 검사에게 진술하기를 본인의 건강상태는 현재 이명증, 고혈압, 당뇨병 등 생명의 위협을 느껴 조사관의 수사조서를 확인할 능력이 없어 사실과 다르게 진술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본 위원도 현장에서 진술하는 것을 참관을 했습니다.

더욱이 본 위원이 지난 2월 21일 진천교육청을 업무현황 확인 차 현장방문, 진천교육장의 심정과 근무현황을 확인한 바, 지금이라도 당장 사퇴 또는 직위해제를 희망하나, 첫째는 교육감에게 그간 직위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수락하지 아니하였고, 둘째는 형사상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중인 공무원은 사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연금의 문제가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친애하는 교육위원,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무너져 가는 우리 공교육을 살리고 붕괴한

교권을 하루 속히 회복합시다.

경기도 교육청에는 형사상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상의 오류, 하청기관의 문제점 때문에 관계기관을 직위해제 시켰고, 그 직위해제에 미흡해서 교육감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것이 교육자의 양심입니다.

사를 버리고 공인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충북교육 복원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야 할 때입니다.

공무원 직위해제 조항의 법적 정신은 형사상 기소되어 재판을 진행하는 자는 자연인의 신분으로 정당하고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며, 공무원행에 막중한 지장을 초래함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법의 취지를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불행히도 지금의 충북교육 현장에서 또 다시 불미스러운 금전관계로 사법기관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현실에 본 위원은 교육자의 자질과 양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의 충북교육의 미래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친애하는 교육위원 여러분!

우리 모두 앞으로의 재발 방지와 충북교육의 권위회복을 위해서, 교육위원 여러분들이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우리 모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적인 어려움을 청산하시고 이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우리 현명하신 교육위원께서는 소신 있는, 우리 모두의 공인으로 양심으로 돌아가서 확실하게 또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우리 집행청에 요구하는 결의안에 찬

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청 관계관계서는 충북교육의 새출발을 위해서 적극 신속한 조치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첨언하는 것은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교육감 직무대행을 하시고 계신 줄 압니다.

앞으로 새 교육감이 선출되더라도 구태에 관한, 이런 것은 청산해 주셔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새 교육장을 임명하기 보다는 직위해제하고 직무대행을 임명하는 것이 우리 교육을 위한 올바른 개선책이 아닌가 해서 첨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환 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조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영학진천교육장직위해제촉구결의안채택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영학진천교육장직위해제촉구결의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채택된 결의안은 즉시 집행청으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 김영학진천교육장직위해제촉구결의안채택의건(별첨 2)

(끝에 실음)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3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이충원 위원님과 조일환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 및 제13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2분 폐회)

[제139회-제1차 본회의]

0 출석위원 : 6명

의장 손만재, 부의장 송진하,
위원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12명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조봉래,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과학실업교육과장 김 검,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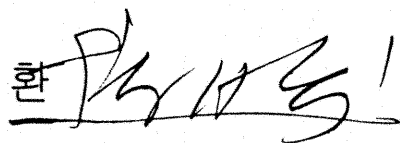
- ▶ 의사일정안(별첨 1)
- ▶ 김영학진천교육장직위해제촉구결의안(별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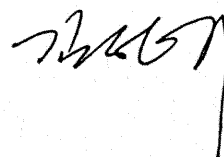
제13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2. 4. .

의 장 손 만 재 

위 원 이 총 원 

위 원 조 일 환 

의사국장 김 성 기 

(별첨 1)

議 事 日 程 (案)

第139回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2. 4. 10 (1 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4月 10日(水) (11:00)	<input type="checkbox"/> 開 會 式 [第1次 本會議] 1. 제13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사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2. 4. 10 (1 일간) 2. 「김영학 진천교육장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input type="checkbox"/> 閉 會	

(별첨 2)

의안번호	제 139 - 1 호
의 결 년 월 일	2002. (제 139 회)

김영학 진천교육장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

발 의 자	조일환 교육위원 외 6인
발의년월일	2002. 4. 2.

김영학 진천교육장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제139 - 1호
----------	-----------

발의년월일 : 2002년 4월 2일

발의자 : 조일환 위원외 6인

1. 주 문(결의문)

2002년 3월 20일 김영학 진천교육장의 직위해제를 권고하였는 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으므로 직위해제 촉구를 결의함.

2. 제안이유

- 2001년 2월 20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김영학 진천교육장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 직위해제할 것을 권고하는 문서를 전체 교육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집행청에 송부하였으나,
- 집행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아무런 결과도 통보 받지 못하였으므로 동 결의안을 채택하여 김영학 진천교육장의 직위해제를 촉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제4호

제73조의2 (직위의 해제)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략)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